

■ Legal Update ■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개정 동향(2012. 10. 4.)

미얀마 떼인세인 대통령은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이하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의 공포를 거부하고 재의를 요구하면서 동 법안을 미얀마 연방의회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초 미얀마 정부의 적극적인 개방의지가 반영되어 외국인투자법이 9월 이내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미얀마 국내 회사의 이익보호 등의 이유로 연방의회에서 승인이 늦어졌습니다. 대통령이 9월 7일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에 대한 공포를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개정안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충분히 개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외국인 단독 투자가 제한되는 사업은 합작투자 형태로만 투자가 가능하고, 합작투자의 경우에 외국인 지분을 50%로 제한하는 조항입니다(외국인투자법 개정안 제 10(a)조(iv)).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투자 대상 회사의 지분을 50%까지만 취득 가능하다면 대상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장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꺼리게 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내국인이 각각 50%씩을 취득한 경우에 사업 운영에 대해서 경영권을 두고 교착상태만 계속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단독 투자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외국인의 취득가능 지분율을 유연하게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개의 사업분야에 대해서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은 제4조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분야

- (1) 민족의 문화적 전통과 관습에 해를 주는 활동
- (2) 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활동
- (3) 천연자원과 천연환경에 영향을 주거나 위해를 끼치는 활동
- (4) 유독성 폐기물을 국내로 들여오는 활동
- (5) 국제조약에 따라 유독성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유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활동
- (6) 내국인이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정한 제조, 서비스업
- (7) 연구 중 또는 사용허가를 얻지 않은 기술·의약품 등을 국내로 반입하는 활동
- (8) 내국인이 할 수 있는 농업 및 장단기 플랜테이션
- (9) 내국인이 할 수 있는 축산업
- (10) 내국인이 할 수 있는 어업
- (11) 국경에서 10마일 이내의 지역에서 운영되는 외국인투자 사업

문제는 이 분야에 대한 정의가 매우 모호하여 무엇을 금지하고 있는지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금지 분야에 대한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위의 조항들을 다시 정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 외국인에 대한 시장개방에 대하여 보수적인 성향의 의원들에 의해 의회에 상정된 '외국인 투자자 5백만불 이상 투자 요건' 조항은 미얀마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연방의회의 최종 승인 안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강도 높은 외국인 투자 제한 조치라는 점에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대로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술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자하면서 숙련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사업개시 이후 첫 2년까지는 채용인원의 25% 이상, 4년까지는 50% 이상, 그리고 6년까지는 75% 이상의 미얀마 현지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조항(외국인투자법 개정안 제24(a)조)은 유지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의 공포가 지속적으로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불안감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외국인투자법 공포가 지연된 이유는 연방의회가 당초 정부가 제시한 외국인투자법 개정안보다 보수적인 내용으로 최종 승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10월 셋째 주에 열릴 의회에 상정되는 법안은 현재 연방의회가 승인한 개정안보다 외국인투자에 대해 보다 더 개방적인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2년 9월 연방의회가 승인한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 (1)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분야 정의(위의 표 참조)
- (2) 외국인투자 제한 분야의 경우 합작회사 형태로 지분투자를 50%까지만 허용
- (3) 은행에서 수용가능한 외화로 투자금액 등록 가능
- (4) 법인세 면제기간 5년으로 확대 및 수출제품에 대한 상업세 감면, 수출을 위한 원자재 수입에 관세 감면
- (5) 부동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최초 50년 임대 이후 10년씩 2회 연장 가능, 민간토지 임대가능
- (6) 투자위원회 허가조건부로 외국인의 지분(주식) 양도 가능
- (7) 고용관련 비숙련 근로자는 미얀마 현지인만 채용 가능하고, 숙련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설립 이후 2년까지는 해당 업무 인원의 25%, 4년까지는 50%, 6년까지는 75%를 고용해야 함
- (8) 공공안보, 경제, 환경, 사회적 혜택과 관련하여 공익에 영향을 주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정부를 거쳐 연방의회에 요청해야 함